

세부보고서 ④
(2023)



• 구금시설



• 식량권



김정은 시대

북한 취약계층의 인권은 향상되었나?



• 취약계층

정은이



• 건강권

K(nu) 통일연구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I. 서론	7
II. 김정은 시대 취약계층 인권 실태	11
1. 여성	13
가. 여성의 권리	13
나. 영역별 차별	16
다. 가정폭력	22
라. 탈북 송환 후 여성 실태	26
마. 성 건강·모성보호	27
2. 아동	30
가. 아동의 권리	30
나. 아동의 복지와 보건	32
다. 아동의 교육권	34
라. 장애아동 권리	39
마. 고아에 대한 실태	40
3. 장애인	42
가. 장애인에 대한 권리	42
나. 장애인에 대한 격리	45
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재고	46

Ⅲ. 코로나19가 취약계층 인권에 미친 영향.....	49
-------------------------------	----

Ⅳ. 결론.....	55
------------	----

CONTENTS



표목차

〈표 II-1〉 제7기~제8기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 변화	20
〈표 II-2〉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관련 과목 연간 교육 시간	36
〈표 II-3〉 정치 행사 및 체제 동원 사례	37
〈표 II-4〉 학생들의 노동 동원 실태	38



그림목차

〈그림 II-1〉 장마당 활성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15
〈그림 II-2〉 코로나19 전후 북한 아동 예방접종률 변화	33
〈그림 II-3〉 아이를 업고 있는 북한 아동	35
〈그림 II-4〉 김정일 생일 80주년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	36
〈그림 II-5〉 도로 보수에 나선 북한의 어린이	39
〈그림 II-6〉 함흥시 애육원 건축 양상 추이(2013년~2021년)	41
〈그림 II-7〉 목발로 이동하는 북한 장애인	45
〈그림 III-1〉 북한 장마당의 외형적 변화와 공설시장화 과정: 평양 동대원 구역 새살림 시장	51
〈그림 IV-1〉 북한의 여성권 실태	57

I

서론



I. 서론

본 보고서는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김정은 시대 북한 인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취약계층은 여성, 아동, 그리고 장애인에 한정한다.

북한은 연이은 도발 및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제재를 받아왔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특히 2016년 이래 북한은 유례 없이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북한 주민 삶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보편적인 전 세계적 현상이며, 더욱이 북한과 같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빈곤국이라면 외부적 충격은 더욱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경을 스스로 봉쇄하여 외부세계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 심지어 코로나19 백신조차 거부하였다. 이는 바꿔 말하면, 여성, 아동, 장애인 등 북한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 또한 시장화가 진전된 지 30년이 넘었다. 더욱이 김정은 집권 이후 여성,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권리 신장 노력이 법·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1년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국가검토(Voluntary National Review: VNR) 보고서이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의거하여 본 보고서는 코로나19 시기를 포함하여 김정은 시대 10년 동안 취약계층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첫째, 2012년부터 현재까지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 면담 조사를 수행했다. 이는 김정은 시대 변화된 법·제도가 실제 현실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접근법이다. 여기서 면담 조사는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김정은 시대 전반적인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국경봉쇄 등으로 인해 2020년 이후 국경이 막혀 있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따라서 셋째,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조사는 무역 통계 및 중국과 왕래하는 중국인 사업가 등을 통한 간접 조사로 진행했다. 넷째, 그 이외에 구글 어스(Google Earth) 위성 자료를 통해 학교나 애육원 등 시설에 대한 외형적 조사와 분석을 수행했다.

김정은 시대

북한 취약계층의 인권은 향상되었나?

II

김정은 시대 취약계층 인권 실태



II. 김정은 시대 취약계층 인권 실태

1. 여성

가. 여성의 권리

북한은 해방 직후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제정을 통해 법과 제도적으로 남녀평등 보장 및 여성 인권을 신장해 왔다고 주장한다.¹⁾ 특히, 남성과 여성의 평등한 정치·사회적 참여권과 가정생활에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사회주의 헌법 및 가족법에 명시하고 있다.²⁾ 한편, 2010년 12월 22일에는 여성권리보장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은 “남녀평등을 보장하며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할 데 대한 국가의 일관된 정책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 담보가 마련되었다”고 자평하였다.³⁾ 그에 앞서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였고, 2002년 9월 최초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에 2·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다.⁴⁾

- 1) 북한 당국이 1988년 개정한 헌법 77조에 따르면,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 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와 유치원망의 확장, 그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와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지어 준다.”
- 2) 북한 가족법 제3장 제 17조 남편과 안해는 자기의 성과 이름을 그대로 가지며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 하고 사회정치 생활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8조 가정생활에서 남편과 안해는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 3) 동 법령은 총 7장 55개 조항으로 제1장 녀성권리보장법의 기본, 제2장 사회정치적 권리, 제3장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 제4장 로동의 권리, 제5장 인신 및 재산적 권리, 제6장 결혼, 가정의 권리, 제7장 여성권리보장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철수, “북한의 ‘녀성권리보장법’에 대한 탐색적 분석:기존 관련 법령과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과 평화』, 제11집 1호 (2019), p. 232 참조.
- 4)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는 최초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14년 만에 제출된 정기보고서이므로 특별히 주목을 요한다고 평가하였다. 도경옥 외, 2016, 『북한 여성 · 아동 인권 실태』 (서울:통일연구원), p. 2.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조국 번영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수행했다”고 자평하였다.⁵⁾ 그러나 북한은 법보다 김정은의 지시가 더 상위에 있다는 점에서 법제 마련으로 북한 실상이 변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19년 UPR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모성보건 환경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2021년 6월 제출한 VNR 보고서에서는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 보장’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였다.⁶⁾ 그 이외에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2012년 11월 16일 ‘어머니날’로 최초 제정하는 한편, 여맹의 위상강화를 통해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다.⁷⁾

이처럼 북한은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여성을 차별하는 관습과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실제 일부 조사에서도 여성의 경제력 향상으로 인해 가정 내 발언권이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비공식 영역은 물론 공식이나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여성 진출이 늘었다는 증언도 부각이 되었다.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성평등적 가치관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으며, 가정폭력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증언도 있었다.

5) UN Doc. CEDAW/C/PRK/2-4 (2016), para. 2.

6)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The United Nations* (June, 2021), pp. 23~24,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Accessed July 6, 2021).

7) “여성을 존중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훌륭한 미덕이며 사회의 문명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당 조직들은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사랑하고 내세우고 도와주는 기풍을 세우며 여성들을 위한 시책들을 정확히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김정은은 2021년 6월 여맹 7차 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여성에 대한 존중을 당부함. (『로동신문』 2021.6.22.).

〈그림 II-1〉 장마당 활성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⁸⁾



다만, 이는 중·하부 영역에서 부각이 되는 변화로, 최고위층으로 갈수록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차별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당을 대표하는 당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중이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이는 바꿔 말하면, 여성들의 정치적, 공식적인 영역의 활동에 여전히 장벽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전히 고정된 성역할과 차별의식이 주민들에게 잔존하며, 이러한 인식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욱 부각이 되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는 북한 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여성의 경제활동 축소를 의미하므로, 여성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한편 가계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8) 『연합뉴스』, 2019.4.14. (사진=연합뉴스)

나. 영역별 차별

북한 여성의 사회 및 가정 내에서의 지위와 역할은 북한 당국의 주장과 달리 봉건적 가부장적 질서에서 형성된 여성에 대한 차별의식이 넓게 퍼져있는 관계로 저변에는 남성 중심의 남녀 차별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즉, 여전히 남성과 여성이 해야 할 일이 구분되고, 남성은 여성에 비해 대접을 받아야 하는 남성 우위의 문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안남도에 거주하다가 2019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은 최근 딸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봉건적인 게 있어서 살림은 여자가, 남자가 돈을 벌고 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증언하였다.

특히 여성은 육아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어서 그에 대한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 청진시에 거주하다가 2019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은 북한은 남자가 살기 편한 나라인데 집안일, 육아, 돈 문제를 다 여자가 신경써야 하지만 남자는 대접받으려고 한다고 증언하였다.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다가 2019년 탈북한 40대 여성은 북한에서는 남자가 아이를 업고 다니면 ‘저 머저리 새끼 아니야’라면서 웃는 경우도 있고 아직 봉건주의적 사고가 남아 있다고 했다. 청소나 밥을 하는 경우는 있어도 아이를 돌보는 것은 무조건 엄마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평안북도 동김군에 거주하다가 2020년 탈북한 30대 여성은 여자는 눈뜨면 시장에 나가고 돈 벌고 깜깜해지면 집에 들어오는 것만 목격했지 특별히 좋아진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또한 평등에 대해서는 가끔 기념일에 들어본 정도이고 여성의 권리는 제도가 있어도 못 누리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평양시에 거주하다가 2020년에 탈북한 30대 남성은 요새 여자들은 더 살기 힘든 것 같은데, 장사를 여자가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더 힘들고, 남자는 직장에 나가고 여자가 부양하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사회적으로 대우를 더 해주는 것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바뀌 말하면 이는 제도적인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남성은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반면에 여성은 결혼하면 부양가족으로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경제난으로 인해 여성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구조로 변한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젊은 세대의 성역할 인식이 기성세대와 조금씩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다가 2018년 탈북한 30대 여성은 경제활동을 해야 하므로 힘든 점도 있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는 남존여비 사상이 많이 나아졌다고 했다. 고난의 행군때는 남자들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으나 지금은 젊은 애들은 집에 와서 집안일, 빨래, 청소, 애 봐주기 등은 같이 하려고 한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일부 증언이지만, 성역할과 남존여비에 대한 인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변화가 있으며, 여자가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 북한도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성별과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남성의 가사 참여가 누적되면서 기성세대의 인식 변화도 다소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령 고정관념이 남아 있다고 해도 남녀가 가사를 함께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 어랑군에 거주하다 2019년 탈북한 20대 여성은 함께 거주한 사촌언니가 장마당에서 일을 하였고 형부가 장사도 돕고 저녁식사도 준비하는 등 집안일도 도왔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주변에 장마당에서 아내가 일을 하면 밥해놓고 집을 받으러 가는 남편들이 많았으며 이제는 남자도 많이 바뀌었다고 증언하였다. 라오스에 거주하다 2022년 탈북한 40대 남성은 장마당 활동을 하면서 여성의 경제적 기여를 많이 하는 만큼 남편들이 예전에 비해 집안 일을 돕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증언하였다.

주목할 점은 남녀평등 인식이 가정마다 다르지만, 최근 가계 살림을 여자들이 벌어서 하다 보니 여자들의 가정 내 지위가 높아지고 있어 여성의 경제력이 북한 사회 내부의 공고한 가부장적 질서에 균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 복지 인프라가 확충되어서라기보다는 여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남성들이 늘어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김정은 집권 이후 정치적, 공적 영역에서의 여성 진출이 증가했다는 증언이 부각되었다. 무역회사, 기업소 및 협동농장의 지배인, 작업반장, 분조장은 물론 군관, 보안원, 보위부, 판사, 검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이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다 2019년 탈북한 50대 여성은 정치에 참여하는 여성 간부 비율이 많아졌는데, 당증을 맨 여자는 무조건 간부로 등용시키고 정치계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증언하였다. 양강도에 거주하다가 2019년 탈북한 40대 남성은 2012년 군사재판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재판의 판사가 여성이었고 군사재판을 위해 평양에서 내려왔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함경북도 청진시에 거주하다 2019년 탈북한 50대 여성은 북한도 요새는 평등을 많이 논하고 여자들 위상이 높아져서 당기관 등에 여성의 진출이 많다고 증언하였다. 양강도에 거주하다가 2020년에 탈북한 40대 여성은 여자 검사는 못봤으나 여자 판사는 많이 보았고, 김정은 시대 와서 여자 보위부, 보안원이 많아졌으며, 여자들도 사회활동을 많이 하도록 한다고 증언하였다.

평안남도 개천에 거주하다 2019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은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지배인, 작업반장, 분조장도 여자가 있으며, 능력만 있으면 다 할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평안남도 동림군에 거주하다가 2020년에 탈북한 20대 남성은 보위부는 여자가 좀 없었는데, 예전에 비해 좀 많아진 것 같으며 요즘은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다. 함경북도에 거주하다 2020년 탈북한 30대 남성은 최근

에는 권력기관에 여성 비중이 많아져서 지배인 당비서, 당일꾼, 최급당 비서들이 많아졌으며, 지배인은 30% 정도 되며, 오히려 여성이 일꾼이나 반장, 지배인을 하면 지지율이 더 높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남녀 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과 사회적인 인식이 완만하게나마 개선되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증언도 일부 있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고성에 거주하다가 2021년 탈북한 20대 남성은 여성 검사나 보안원 수가 늘어난 이유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침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다 2019년 탈북한 50대 여성은 지배인, 작업반장, 분조장 중 여성들이 있으며 이는 국가에서 간부의 30%를 여성으로 쓰라는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다가 201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은 2017년 전국적으로 여성 일꾼들을 많이 쓰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침이 내려왔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정책적 변화로 인해 여성들에게 교육, 특히 대학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탈북한 20대 여성은 어릴 때 아버지가 아들을 원했지만 고생을 하여 딸들이 다 대학공부를 마쳐 아들 부럽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반대로 과거에는 여성의 영역이라 남성의 진출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했던 직업군에 대해 이제는 남성도 진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을 받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더욱이 여성은 과거와 달리 화장품을 비롯하여 옷, 가방, 구두 등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및 정치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두각은 여전히 중·하부층에서 보이는 것으로, 고위계층의 영역으로 갈수록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당중앙위원회에서 여성의 비중이 상당히 낮

다. 즉, 전당대회에서 선거된 위원과 후보위원으로 구성된 당중앙위원회는 당-국가체계의 핵심 권력을 망라하는 집합체로, 2016년 제7기와 2021년 제8기에 각각 250명이 선발되었다.⁹⁾ 이들은 당·정·군의 핵심 요직으로 망라되며 이를 중심으로 당 지도기구와 국가 권력체계를 구성한다.¹⁰⁾ 그런데 <표Ⅱ-1>과 같이 2016년 제7차 대회에서 여성은 250명 중 9명으로 3.6%에 불과하였다. 2021년 제8차 대회에서는 오히려 250명 중 6명으로 오히려 2.4%로 더 하락하는 추세였다. 김정은 시대 10년을 경과하면서 당 중심의 당-국가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그 중추적 역할을 노동당 중앙지도기관이 담당한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표Ⅱ-1> 제7기~제8기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 변화

구분	제7차대회 (2016.5.6.~9.)		제8차대회 (2021.1.5.~23.)		비고
구성	250명		250명		
	위원	129명	위원	139명	
	후보위원	106명	후보위원	111명	
	검사위원	15명	검사위원	(검직/15명)	
분야별 (비율)	당	67명 (26.8%)	당	78명 (31.2%)	당 △ 4.4%
	정	115명 (46.0%)	정	120명 (48.0%)	정 △ 2.0%
	군	68명 (27.2%)	군	52명 (20.8%)	군 ▽ 6.4%
	여성	9명 (3.6%)	여성	6명 (2.4%)	여성 ▽ 1.2%

출처: 김인태, “김정은 시대 10년: 노동당 중앙지도기관의 구성과 변화,” 『INSS 전략보고 133호』 (2021, 국가안보전략연구원), p. 2, <표 1> 참조

그 이외에도 시골 지역은 성에 대한 고정관념 및 여성에 대한 사회적

9) 위원 139명, 후보위원 11명 선발. 이에 관해서는 김인태, “김정은 시대 10년: 노동당 중앙지도기관의 구성과 변화,” p. 2 참조.

10) 위의 글.

인식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2020년에 탈북한 20대 남성은 시골이 도시보다 봉건적인 사고가 더 많이 남아 있어서 남녀 차별이 심해 여성들의 삶이 더 힘들다고 증언하였다. 바꿔 말하면, 봉건적인 사상이 시골에는 여전히 뿌리 깊어 남아 있어 남녀 차별에 대한 기존 인식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여성이 가정 내 경제력을 획득하면서 여성에게 억압적인 가부장적 질서를 거부하고 배우자의 외도나 음주 및 폭력과 같은 부당한 상황을 인내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아편이나 빙두 등으로 결혼생활이 불가능해질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이혼은 흠이라는 인식이 없어지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다만, 이혼하려면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애초에 결혼 등록을 아예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가 많다는 증언도 늘어나는 추세였다. 예를 들어 평양시에 거주하다 2020년 탈북한 30대 남성은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여러 차례 소환하는 등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이혼 재판부가 독립성을 가지지 않고 당 규약에 의해 원칙과 절차가 적용된다고 증언하였다. 자강도에 거주하다가 2019년 탈북한 30대 여성은 자신의 동네에서 이혼절차를 밟은 사람이 한분 계셨는데 재판소에서 요구하는 돈을 주었고 절차가 2년 이상 걸렸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헌법에서 제시한 방향과는 달리 여전히 이혼은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며 여성이 불리하다는 입장이다.¹¹⁾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법은 2010년 12월 여성권리보장법과 같은 날 제정된 아동권리보장법이다. 특히 54조는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 재판소 등에 대해서도 아동을 가진 부부의 이혼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아동의 이익을 위해 부

11) 북한 가족법 제21조 리혼의 조건에는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흑심하게 배반했거나 그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리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가 갈리지 않도록 교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역설적으로 여성은 경제활동이 증대되면서 오히려 육아를 비롯한 가정과 생계를 모두 떠맡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혼을 하는 경우 일부 드러난다. 예를 들어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다 2018년 탈북한 40대 여성은 남성이 이혼 시 자녀를 굶기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모성애가 강한 여성이 주로 자녀를 양육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북한은 남녀 평등법 및 가족법에 양육비에 대한 필요를 확인하고,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는 양육하는 당사자에게 자녀가 노동가능한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남성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만약 이혼 시 여성이 자녀 양육을 떠맡는 상황에 이른다면, 여성의 부담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실제 일부 조사에서 양육비에 대한 개념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에 거주하다 2019년 탈북한 60대 여성,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다가 2019년에 탈북한 40대 여성, 함경북도 어랑군에 거주하다 2019년에 탈북한 20대 여성, 평안남도 개천시에 거주하다가 2019년 탈북한 30대 여성은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다. 가정폭력

북한 헌법에 따르면, 결혼과 가정이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제78조), 나아가 북한 여성권리 보장법에도 온갖 형태의 가정폭력을 금지하고 있다(제46조 제1항).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정상에 따라 행정적 책임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다(여성권리보장법 제55조). 그러나 북한 형법은 사람에게 폭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제275조) 가정폭행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많은 북한이탈주민은 여전히 가정폭력이 빈발하고 있지만, 가정폭력을 가정 내 문제로만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증언했다. 예를 들어, 평양에 거주하다 2019년 탈북한 50대 여성은 가정폭력을 신고해도 안전부(사회안전성)에서 도움을 주지 않고 가족끼리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였다고 증언했다. 평양시에 거주하다가 2020년 탈북한 30대 남성은 가정폭력이 발생해도 신고하는 시스템이 없고 그냥 참고 살아야 한다고 증언하였다.

경제적 빈곤뿐만 아니라 외도, 음주, 마약 등을 이유로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여성뿐만 아니라 아동도 함께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 권리 신장을 표방하는 여맹 역시 가정폭력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 시설도 부재하다. 가정폭력이 극단적인 상황을 빚어서야 비로소 교화소나 교양소 처벌받을 수 있다.¹²⁾ 예를 들어, 평안남도 개천시에 거주하다 2019년에 탈북한 30대 여성은 와이프를 때려서 교화소에 1~2개월 가는 것은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든 머리가 깨지든 심한 경우라고 증언하였다.

가정폭력과 가정불화의 원인을 여성의 잘못이나 결함에 두는 왜곡된 인식이 뿌리 깊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여성이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향이 강해 실질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처럼 북한에서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편, 최근에는 예전보다 가정폭력이 감소하는 추세라는 증언이 동시에 수집되었다. 경제력을 갖춘 여성의 권한과 목소리가 가정 내에서 커짐에 따라 남편의 폭력 빈도가 줄어든다는 증언이다.

12) 반면에 북한 구타행위방지법 제14조에 따르면,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법 기관은 구타행위를 단속처리하지 않거나 구타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고도 묵살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3조 “사회안전기관과 해당 법기관은 구타행위의 조사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구타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해서는 직위와 공로에 관계없이 위험성 정도에 따라 행정처벌을 적용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함경북도 함흥시에 거주하다가 2019년에 탈북한 50대 여성은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면서 가정 내 여성의 권한과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예전처럼 살지 않으며, 가정폭력이 미개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이러한 남성과는 헤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여성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여성이 참지 않고 헤어지거나 이혼해버리기 때문에 남자들 자체도 폭력을 자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혼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만큼 경제력을 갖춘 여성들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함경남도 함흥시에 거주하다 2019년 탈북한 50대 여성은 보통 맞고 살거나 진짜 못 살겠으면 이혼을 하긴 하는데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별거하는 경우도 많지만, 돈이 있어서 뇌물을 주고 빨리 처리했다고 했다. 이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돈 있는 여성 중심으로 이혼이 가능하다는 불평등한 요소가 커졌음을 의미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젊은 세대 중심으로 부각이 되었다. 젊은 세대들은 폭력을 미개한 일로 취급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는 결혼의 기피 요소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양강도 혜산시에 거주하다가 2019년에 탈북한 20대 여성은 결혼 기준, 연애 기준에 못 따라가면 남성들이 결혼하기 어려우니 많이 노력한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젊은 여성들 중에는 신혼이거나 자녀가 어려도 폭력을 감내하지 않고 이혼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여성들이 설령 이혼을 결심한다고 해도 이혼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 돈 없는 여성은 참고 살 수 밖에 없는 등 현실적인 장벽에 직면해 이혼이 매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따라서 이는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별거라는 또 다른 형태의 실질적인 이혼 양상을 낳았다.

가정 내 폭력과 관련하여 주목할 또 다른 점은 도시와 농촌 간의 인식 차이가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즉, 도시의 경우 여성들의 경제적 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의 가정 내 위상 강화로 인해 폭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촌은 여전히 봉건적 인식이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폭력이 만연하지만 이에 대해 큰 문제라고 인식하는 여성 또한 적다.

한편, 성폭력은 은밀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 공개를 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군 주둔지역 및 군대 내 성폭력 문제 제기가 많으나 이에 대한 처벌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평안북도 동림군에 거주하다 2020년 탈북한 20대 남성은 상사가 부하를 강간하는 경우는 조용히 넘어가며 설령 제기한다고 해도 부하 여자 군인만 조방되거나 제대된다고 증언하였다.

최근에는 주로 역을 끼고 있는 도시의 숙박업소 중심으로 성매매가 만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경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평안남도에 거주하다 2019년 탈북한 30대 여성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으며, 보안원을 끼고 해서 단속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증언하였다.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 해당 사건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물리적 폭력이 동반되지 않는 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여성들이 성적 착취 내지 피해를 당해도 이것이 심각한 성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성교육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에 대한 원인이다. 즉, 전반적으로 북한은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으로 건전한 성 의식이 형성되기 어려운 구조다. 조사에서도 학교나 가정 내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은 사례는 매우 미비했다. 오히려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사회적으

로 수치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이 성폭력에 노출되어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반적이었다.

라. 탈북 송환 후 여성 실태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에 취약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더 큰 문제는 인신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이다. 특히 중국 거주 기간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결정되지만, 최근 탈북 여성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김정은 집권 이후 강제 송환된 여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9년 탈북한 50대 여성에 따르면 과거 인신매매 피해자는 단련대에 보내졌지만, 최근에는 형벌이 강화되어 교화소에 보내지고 5~10년 형을 받는다고 한다.

특히, 김정은 체제 출범을 전후하여 국경통제 및 탈북 단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중국 측 국경통제도 함께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탈북한 평안북도 북한이탈주민에 의하면, 원래 신의주는 수해 방지를 위해 도시 주변으로 독을 쌓아 놓으며, 여느 때 같으면 압록강 풍광을 보기 위해 독을 건지만, 2015년부터 국경에 철조망이 쳐지고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는 등 경비가 강화되어 더 이상 독에 올라 압록강 풍광을 보는 일이 없어졌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강제 송환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위한 뇌물의 액수가 치솟고 있으며, 재탈북에 성공하는 경우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탈북자 가족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과거의 탈북은 인신매매를 당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인신매매에 대한 중국과 북한 양국의 처벌이 매우 엄격해짐에 따라 인신매매 사례가 감소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 대신 도강비용이 치솟아 탈북의 기회가 돈 있는 사람들만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한국행이

라는 사실이 명확해짐에 따라 탈북을 시도했다가 발각되었을 경우 처벌 또한 더욱 강화되었다는 사례가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탈북한 평안남도 출신 이탈주민은 탈북비용이 1인당 최소 한화 1,500만 원 전후로 급등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는 바람에 한국으로 직행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한편,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중 가장 큰 문제는 강제송환 과정에서의 강제 낙태와 조사과정에서의 비인도적 처우이다. 중국에서 임신한 이후 강제 송환된 여성들에 대해 낙태를 종용하고 출산 시에 영아를 방치하여 사망하도록 하는 사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제기되자, 북한은 일부 지역에서 출산을 허용하고 아이를 중국 남성 가족에게 인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에서 거주하다 강제송환된 여성이 중국인의 아이를 임신한 경우, 송환 과정에서 강제로 낙태 시킨다는 것을 목격하였거나 들었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수집되고 있다.

마. 성 건강·모성보호

북한은 어린이와 어머니의 보호 원칙을 헌법에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¹³⁾ 그러나 많은 북한 여성은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한 과중한 노동, 가족부양 책임 증대에 따른 심적 부담 등으로 인해 영양실조와 빈혈에 시달리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이 공동 발간한 ‘2000~2020년 모성사망률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20년간 북한은 출생아 10만 명 당 모성사망률은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나, 한국 등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

13) 북한 가족법 제6조는 “어린이와 어머니의 리득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된 시책이다. 국가는 어머니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적으로 높다. 특히, 그 원인으로 산후 출혈, 고혈압, 임신 관련 감염, 안전하지 않은 낙태에 따른 합병증 등 모성보호를 위한 북한 의료시설의 낙후성 및 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 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북한 의료법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나 모성보호를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의료법 제28조).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다 보니, 병원보다는 퇴직 의사가 있는 집에서 이루어지거나, 개인 의사가 집에 와서 수술한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되었다. 특히 미혼은 병원 차트에 기록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하고, 가정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서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북한은 남성이 피임한다는 사례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콘돔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예를 들어, 2020년에 탈북한 20대 남성은 콘돔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서 콘돔을 접했을 때 풍선으로 오인하여 그걸 가지고 놀았으며 드라마를 보고 비로소 콘돔의 존재를 깨우쳤다고 증언하였다.

바꿔 말하면 사회가 여성에게 피임을 강요하는 관례가 만연하고 있다. 이는 피임과 낙태가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 장비가 충분치 않은 개인 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주의는 크지 않으며, 낙태의 위험성도 잘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낙태하다 사망했다는 경우를 들어봤으나 많지 않다는 증언이 일부 있었다. 한편 부인병이 많고 이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증언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암과 같은 심각한 부인병이 많은 이유가 의료시설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가벼운 병임에도 오진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례가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탈북한 20대 여성은 진단할 수 있는 의료 장비가 부족하여 근종으로 보이면 무조건 암이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출산휴가에 대해 살펴보면 북한은 2015년 임신부의 출산휴가를 기존의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하였으며, 2019년 UPR 보고서에서도 이 같은 조치를 주장하였다.¹⁴⁾ 이와 관련해서는 출산휴가가 잘 지켜지며, 임신한 여성은 동원에서 면제된다는 증언이 많다. 출산 비용은 무료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출산 시 비용이 발생한다고 증언한다. 즉, 북한은 모성보건을 위해 임신부에게 제도적으로 다양한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¹⁵⁾ 출산 비용은 무료이며, 출산휴가가 보장되고, 젖먹이가 있거나 임신한 여성에게는 야간 노동을 금지하는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전히 임신 및 출산 과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모성보건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지표는 모성사망률일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은 2019년 UPR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서 2014년 10만 명당 62.7명이었던 모성사망률이 2017년 53.2명으로 감소되었다고 밝혔다.¹⁶⁾ 3년 사이 10명 가까이 감소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제적으로 볼 때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한다. 게다가 2023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2000~2020년 모성사망률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북한의 모성사망률은 출생아 10만 명당 107명으로 북한의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¹⁷⁾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에는 개인 의사가 오기도 하지만, 자격증이 없는 산파의 도움을 받는다. 그런데 의료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의 출산은 아무래도 병원에서의 출산에 비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모성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8.

15) 이금순 외, 『북한의 건강권』 (서울: 통일연구원, 2018), pp. 34~37.

16)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70.

17) WHO,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2000 to 2020: Estimates by WHO, UNICEF, UNFPA, World Bank Group, and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생리대 사용과 관련해서는 헌옷, 가제천 대신에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어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산 생리대는 초기에는 가격이 비싸고 품질이 낮았지만, 최근에는 북한돈 3,000~5,000원 정도이고 포장도 예쁘고 기능성 제품들이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어 중국산보다 북한산이 더 좋다는 증언이 부각 되었다.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젊은 세대일수록 일회용 생리대 사용이 필수가 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즉,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여전히 생리대를 사용하지 못하고 가제천을 사용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 아동

가. 아동의 권리

북한은 1990년 9월 21일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고, 한 달 뒤 발효했다. 이어 2014년 11월 10일에는 「아동 매매·성매매·아동 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10일부터 발효했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당사국들이 협약 발효 이후 2년 내 그리고 그 이후에는 5년마다 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은 1996년 2월 최초보고서, 2003년 5월 제2차 보고서, 2007년 12월 제3·4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후 약 10년이 경과한 2016년 4월에 제5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¹⁸⁾ 그에 앞서 북한은 아동권리 보장법(2010년) 제정, 보통교육법(2011년) 제정, 전반적인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법령 발표(2012년), 조선어린이후원회(2013년) 창설,

18) 도경옥 외, 『북한 여성·아동 인권 실태』(서울:통일연구원, 2016), pp. 1~2.

「아동의 매매·성매매·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2014년) 비준 등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 권리 신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¹⁹⁾

이어서 북한은 2019년 UPR에서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치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아동에게 제공하고, 아동 영양을 과학적으로 관리하여 영아 사망률과 만성 및 급성영양 실조 비율을 낮추었으며, 문화와 여가 및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을 여러 지역에 건설하여 아동의 창의적 사고가 증진되도록 했다고 보고하였다.²⁰⁾ 이와 더불어 북한은 2021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별 검토(VNR)에서 아동 사망률 감소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2030년까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1,000명당 12명 미만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²¹⁾ 무엇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교육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고,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들을 확충하였으며, 대형 아동병원을 설립하여 아동의 성장과 영양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선전해 왔다.²²⁾ 즉, 북한 당국은 고아나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 증진을 위해 육아원, 애육원 등 고아들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 장애아동을 위한 의료시설과 재활시설을 확충 등에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실제 각 지역 주민에 대한 면담 조사 및 구글 위성 자료를 확인하면, 신의주, 함흥 등 대도시에서 대규모로 애육원이 건설되고 있었다(〈그림 II-6〉참조).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건설 과정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해 보면,

19) 위의 책, p. 35

20)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s. 61–64.

21)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The United Nations, June, 2021, p. 19,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Accessed July 6, 2021).

22) 북한은 2021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관한 자발적 국별 검토(VNR)에서 아동 사망률 감소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2030년까지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을 1,000명당 12명 미만으로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The United Nations* (June, 2021), p. 19,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content/documents/282482021_VNR_Report_DPRK.pdf> (Accessed July 6, 2021).

각종 사회적 과제 제출 등으로 인해 인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러한 시설을 고아들이 이용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나. 아동의 복지와 보건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당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보육시설의 확충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19년 북한은 UPR에서 공공 보건의료를 개선하여 평균 기대수명을 늘리고, 유아 사망률 감소를 보건 부문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는 등 주요 건강 지표를 선진국과 일치시키기 위해 국가 투자를 늘리고 제도적, 실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하였다.²³⁾ 2021년 VNR에서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평양유선종양연구소, 옥류아동병원, 류경안과 종합병원, 류경치과병원 등 현대적 의료시설을 설립하고 2020년부터 평양종합병원 건설을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²⁴⁾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제기구에서 보고한 추정치에 따르면, <그림 II-2>과 같이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률은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호전되어 왔다. DPT, 소아마비 백신, 홍역, B형 간염 백신 등이 거의 100% 가까운 접종율을 기록하였으며, 홍역 2차 접종률도 2015년 85%에서 2016년에는 98%로 크게 상승하였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그동안 계속되어온 영유아에 대한 예방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는 사실이다. 국제아동기금과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백신면역연합(GAVI)이 2022년 10월 제출한 코로나19 백신 딜리버리 파트너십 상황 리포트에 의하면, 에리트리아와 북한이 유일하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고 있었다.²⁵⁾ 더욱더 큰 문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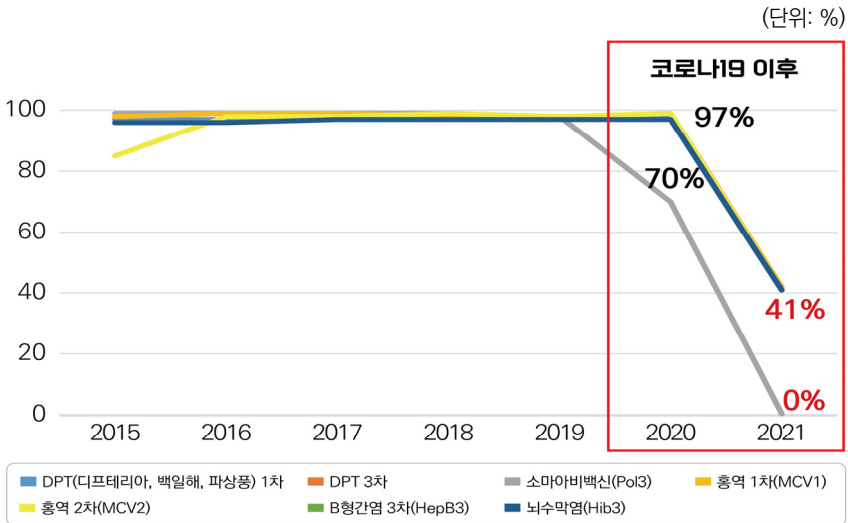
23)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35.

24) DPRK,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p. 18.

25) Unicef, WHO, GAVI, "COVID-19 Vaccine Delivery Partner ship Situation Report", p. 7

코로나 19백신뿐만 아니라 이 기간동안 영유아에 대한 기타 다른 백신 접종률이 극히 낮다는 사실이다. <그림 II-2>와 같이 DPT 1차와 2차는 각각 2020년 98%와 97%에서 42%와 41%로 절반 이상 하락하였다. 소아마비 백신은 2019년 98%에서 2020년에는 70%로 하락하였으나 2021년 코로나19 기간에는 0%로 전혀 유입되지 못하였다. 홍역 1, 2차 또한 2020년에는 각각 99%에서 42%와 41%로 절반 이상 접종률이 하락하였다. 그 이외의 백신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림 II-2> 코로나19 전후 북한 아동 예방접종률 변화²⁶⁾



주: 추정치임.

즉, 북한 보건성은 유엔아동기금 및 국제백신면역연합 등과 함께 영유아 예방 접종 사업을 지속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와 인력과 물자 이동 차단으로 인해 필수 백신에 대한 수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6) WH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and UNICEF estimates of immunization coverage: 2021 revision," <https://cdn.who.int/media/docs/default-source/country-profiles/immunization/2022-country-profiles/immunization_prk_2022.pdf?sfvrsn=fb196045_3&download=true> (Accessed September 4, 2022).

특별히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의약품, 의료기기 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북한 주민의 건강, 특히 아동의 건강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영양 상태 또한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수의 북한 아동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 비율이 2018년 42.6%에서 2019년 43.0%로 하락하였고 2020년에는 41.6%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1,070만 명이 영양부족 상태에 놓여있다.²⁷⁾ 2020년 북한의 영양부족비율(41.6%)은 아프리카 19.1%, 최빈개도국 22.9%, 저소득국가 29.6% 보다 높은 수준이다.²⁸⁾ 이미 만성적인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2020년 1월 이후 이어지는 코로나19 봉쇄 조치는 식량불안정성을 야기하며 식량수급에 차질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다. 아동의 교육권

김정은 시기 들어 무상교육제도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에 제도화와 현대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전국적으로 본보기학교 건설과 현대화 공사, 다기능화된 교실 확대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교육 조건과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주요 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화 및 도시화가 덜 진전된 농촌이나 중소도시의 경우,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 아동들이 생계에 뛰어들어 학교 출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증언이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19년에 탈북한 남포특별시 출

27) FAO, IFAD, UNICEF, WFP and WHO,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2* (Rome: FAO, 2022).

28) *Ibid.*

29) 『조선중앙통신』, 2022.7.6.; 『로동신문』, 2022.2.13.

신 이탈주민은 도시의 경우, 출석율이 높지만 농촌에 가면 아이들이 학교도 나가지 않고 생계를 위해 일하러 간다고 증언하였다.

〈그림 II-3〉 아이를 업고 있는 북한 아동



바꿔 말하면, 이는 그만큼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정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김정은 시대 호전된 정책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설령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해도, 북한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보면 여전히 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다. 교육과정 〈표 II-2〉와 같이 여전히 정치·사상교육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으며, 현 최고지도자와 그의 가계를 우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II-2〉 김일성·김정일·김정은 관련 과목 연간 교육 시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초급중학교	1학년	68시간		34시간
	2학년	68시간	68시간	34시간
	3학년		68시간	34시간
고급중학교	1학년	104시간		27시간
	2학년	56시간	56시간	27시간
	3학년		92시간	27시간

출처: 이우태 외, 『북한 인권백서 2022』(서울: 통일연구원), p. 404 표 IV-5 참조

더욱이 〈표II-3〉 증언에서와 같이 정치·사상교육이 정규 교과 과정에 뿐만 아니라 조선소년단,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 의무적인 조직 생활을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제적이라는 것이다.

〈그림 II-4〉 김정일 생일 80주년 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³⁰⁾

30) 『조선중앙통신』, 2022.2.12. (사진=연합뉴스)

〈표 II-3〉 정치 행사 및 체제 동원 사례

증언내용	한국 입국 년도
각종 행사에 너무 많이 동원되었음. 7차 당대회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집단체조를 해야 했고 각종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가창선전대를 했음.	2019
김일성 생일, 김정일 생일 등 명절에 보고대회에 동원되어서 박수치고, 수령님 노래 부르고, 애국가를 부름.	2019
정치행사는 필수였고 강도도 심했음. 어린 나이에 매일 1시간씩 걸어서 큰 광장에서 사열식, 열병식을 했었음.	2019
2015년 소학교 시절 겨울(3.8 국제부녀절 추정)에 꽃이나 부채를 들고 열을 지어 걸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30분 정도 도로를 도는 동원이 있었음.	2020
정치행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일성이나 김정일 생일날. 혹은 설날이나 민속 명절날 같은 때에 태양상에 꽃다발 바치는 정치행사를 하며 빠지면 처벌이 큼.	2020

이러한 정치행사 및 체제선전 동원은 수도 평양에 더욱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이 아동의 발달권을 보장한다는 북한 당국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각종 정치행사나 체제선전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국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를 당국이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적 부담이나 학습 방해 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아동의 나이를 16세까지로 규정하고 아동노동이 철폐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표 II-4〉와 같이 16~17세의 아동의 노동 부대배치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표 II-4〉 학생들의 노동 동원 실태

증언내용	한국 입국 년도
2017년 고급중학교 때 농촌동원을 가는데 봄에는 모내기 동원, 가을에는 감자동원을 갔음.	2017
중학교 4학년(고등중 1학년) 때부터 모든 학생이 매년 의무적으로 농촌동원을 나가는데, 보통 새벽부터 했음. 매년 약 20일 정도 나가는데, 5월 말 모내기철 전에 나가서 김매기 끝나고 6월 중순에 들어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의무적이라서 정신적 부담감과 압박감이 심함.	2019
소학교 아이들은 노동동원이 많아 저녁에는 힘들어서 쓰러짐.	2019
가을걷이 할 때 농촌에 가서 도와줌. 식량은 본인이 챙겨가야 했고 강도도 심했음. 또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학생을 동원시켜서 시멘트나 돌나르기를 시킴.	2019
중학생일 때 오후 수업은 4시 전으로 끝남. 수업 끝나면 일하러 갔음. 노동력이 필요한 곳은 직장, 도로, 철길 등 어디든 가서 일함.	2020

북한 교육과정을 보면, 초등생들도 나무 심기가 있고, 고급중학교의 경우 나무 심기와 생산노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 외에도 방과 후나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각종 작업에 수시로 동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봄에는 김매기와 모내기, 가을에는 감자 캐기에 동원된다. 매년 의무적으로 나가는 농촌 동원은 새벽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으로 힘들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 정신적인 부담도 크다고 한다. 또한 농촌동원에 나갈 경우, 숙식을 농가에서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고충은 더욱 가중된다. 학생들은 모래 나르기, 자갈 나르기와 같은 건설작업이나 벌목, 철길 공사에 동원되기도 한다. 몸이 아픈 경우엔 동원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동원에서 빠지려면 대부분 돈을 내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그 이외에도 학교에서 토끼 가죽, 각종 동이나 철, 폐지 수집 등 학생들에게 수많은 과제를 부과하기도 한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아동들은

학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상당한 인신공격 등 고충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가계의 경우, 아동들이 생계 활동을 하면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

〈그림 11-5〉 도로 보수에 나선 북한의 어린이³¹⁾



이에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교육과정에서 수행되는 각종 농사 및 건설 활동 등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³²⁾

라. 장애아동 권리

북한은 장애아동에 대한 권리 증진에 관해서는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내부적인 법 제정 및 국제사회와 장애인 권리에 관한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북한은 2018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보고서를 통해 장애인 교육시설 확충, IT 기반 시설 확대 등 장애아동을

31) 『연합뉴스』, 2014.11.25. (사진=연합뉴스)

32) UN Doc. A/HRC/WG.6/33/PRK/2 (2019), para. 87, 88.

위한 양질의 교육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2019년 UPR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자 학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제도적 조치를 마련했다고 보고하였다.³³⁾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증언에 의하면, 장애인 교육시설을 직접 목격하거나 들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급 운영이나 장애아동 재활 및 직업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은 수집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평양 외곽에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유치원이 개원했다는 소식이 단편적으로 있으나,³⁴⁾ 북한 전역에 시청각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는 11개에 불과하다. 특히 양강도 지역에는 이러한 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실태가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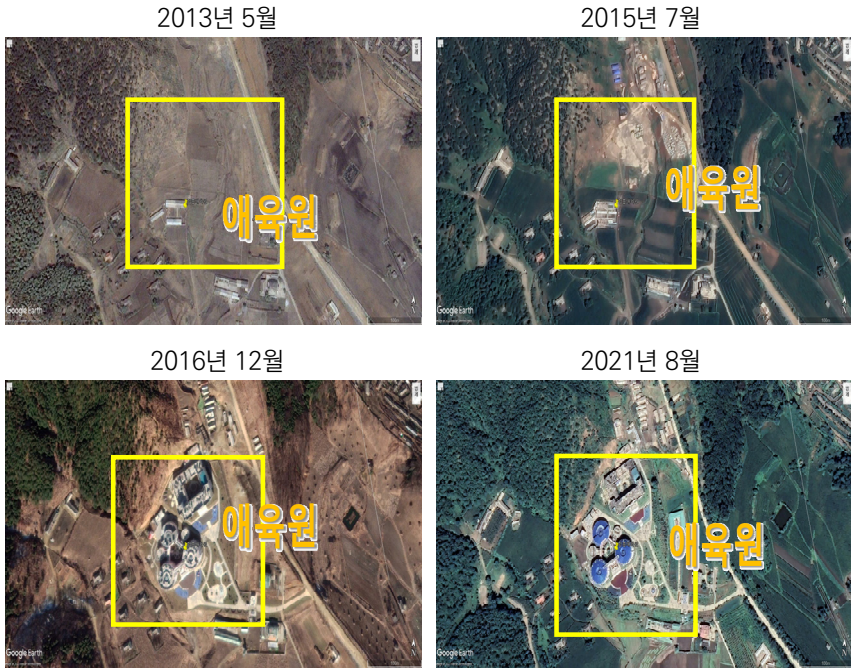
마. 고아에 대한 실태

북한 당국은 애육원 및 육아원 등 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시설 확충과 지원 노력을 통해 취약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구글 어스 위성자료 및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면담 조사 결과, 평양을 비롯한 신의주 등 주요 도시마다 애육원, 육아원에 대한 시설이 현대화된 설비로 새로 신축된 양상들이 부각이 되었다. 예를 들어 <그림 II-6>은 김정은 집권 이후 함흥시 애육원 시설의 외형적인 모습의 변천 과정을 담았는데, 2013년과 2016년 이후 애육원의 모습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즉, 2016년에 함흥시 애육원이 현대화된 건축물로 새롭고 규모 있게 건설되었다.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면 김정은 시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일부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3) UN Doc. A/HRC/WG.6/33/PRK/1 (2019), para. 11.

34) "North Korea opens kindergarten for hearing-impaired children," *UPI*, July 1, 2016 <<https://upi.com/6352451>> (Accessed July 6, 2021).

〈그림 II-6〉 함흥시 애육원 건축 양상 추이(2013년~2021년)



출처: 구글 어스와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러나 이러한 설비 신설 노력 및 제도 변화가 실제로 얼마나 아동의 권리를 향상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선 이러한 시설의 설립 비용 및 노력이 국가가 아닌 해당 지역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더욱이 〈그림 II-6〉과 같이 시설이 시내와 멀리 떨어진 도시 외곽에 신설 되는 과정에서 주민 고충이 한층 가중되었다는 증언이 있다.

예를 들어, 2019년 평안남도에서 온 이탈주민은 “김정은 시대 들어 애육원 등을 많이 건설하였는데,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을 뿐 인민반, 공장 기업소 등 주민들에게서 자금이나 노력을 동원하였으며, 신의주는 인민반 별로 한 세대당 10위안을, 청진은 내화 7천 원 정도를 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건설에 동원되어 나가야 했는데, 애육원을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건설을 하다보니 한번 가려면 도시락을 싸서 2시간 이상 가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북한 당국이 도시 중심에 있던 애육원을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새롭게 건설하는 이유가 낡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육원 아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것이며, 장마당에서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증언이 있다. 실제로 꽃제비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증언들이 수집되었다. 2019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꽃제비는 별로 없었으며 코로나 발생 이전 시기였기에 쌀값도 안정적이었고 장마당에 1~2명 있는 정도라고 하였다. 이 외에도 꽃제비는 거주지 부근에서 가끔 목격되거나 거의 볼 수 없었다는 증언이 수집되었다. 반면, 꽃제비는 여전히 많거나 증가한다는 증언도 확인된다.

북한 당국은 그간 꽃제비들을 보호·관리한다는 취지 아래 단속에 걸린 꽃제비들을 ‘구호소’, ‘숙박소’, ‘소년교양소’, ‘방랑자 숙소’, ‘구제소’ 등으로 불리는 수용시설로 보냈다. 그러나 새롭게 신설된 애육원이 고아들의 통제와 관리 목적으로도 새롭게 건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김정은 시대 주민들이게 과시적인 정책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일환으로 애육원이 신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3. 장애인

가. 장애인에 대한 권리

북한 당국은 장애인 차별대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 및 우려를 의식하여 장애인보호법을 채택하였다. 장애인보호법(2013)은 “장애자의 회복 치료와 교육, 문화생활, 노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장애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하여 주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이 법의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지장을 받

는 공민”으로 규정하고 “국가는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의 사회정치적 권리와 자유, 이익을 건강한 공민과 똑같이 보장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보호법(2013)에는 장애자의 회복치료(제2장), 장애자의 교육(제3장), 장애자의 문화생활(제4장), 장애자의 노동(제5장) 등에 관한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사회보험법, 사회주의노동법, 사회보장법 등에도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장애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단체로는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활동하고 있다.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장애인에 대한 조사 수행, 보건과 생활조건의 개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도의 제고를 위한 행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각 도와 시·군에 산하 위원회를 두고 있다.³⁵⁾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보건성이 임직원의 급여 및 기반 시설 경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비정부기구(NGO)로 구분하고 있다.³⁶⁾ 또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산하에 조선농인협회, 조선장애어린이회복원, 조선맹인협회, 조선장애자후원회사,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조선장애자예술협회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³⁷⁾ 또한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2008년 7월 베이징에 처음으로 대표부를 개설하였다. 그리고 2015년 선양대표부를 개설하였고 리분희 전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이 초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³⁸⁾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최초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실행계획(Action Plan) 2008~2010, 실행계획 2013~2015, 실행계획 2016을 수립·시행하였으며 장애인권리보호를 위한 전략계획 2018~2020을 시행하였다.³⁹⁾

35) CRC,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The Combined Third and Four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07: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 Doc. CRC/C/PRK/4 (2008), para. 134.

36) Katharina Zellwege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 Changing North Korea,” *Shorenstein APARC Working Paper* (2014).

37) 『로동신문』, 2012.9.30; 『조선중앙통신』, 2014.12.16.; 『조선중앙통신』, 2020.12.3.

38) 『미국의 소리』, 2015.5.13.

39) UN Doc. CRPD/C/PRK/1 (2018), para. 30.

2019년에는 제3차 UPR 시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를 수용하였다.⁴⁰⁾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인식이 북한 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를 별도의 시설에서 진행함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일반 주민들은 장애인들을 거주지 주변에서 목격하기 어렵고 장애인들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다.

영예 군인들에게는 부분적으로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휠체어나 의족 등은 시장에서 돈을 주고 구입 해야 했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 영예 군인 1급에 한해 국가에서 휠체어가 공급이 되거나 장애인들에게 의족 등이 공급되어 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언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재해 및 사고로 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 및 지원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정은 시대 들어 장애인이나 영예 군인들에⁴¹⁾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난으로 인한 공장가동률의 하락 및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는 북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들의 건강과 교육, 노동에 대한 권리 향유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 북한은 영예 군인 공장, 일반 장애인 공장 운영 등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재정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 UN Doc. A/HRC/42/10/Add.1 (2019), para. 9(a).

41) 북한의 '영예 군인'은 군 복무기간 중 부상을 당해 제대한 상이군인을 말한다.

나. 장애인에 대한 격리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는 대표적 인권유린 사례는 거주지 선택과 지역사회 통합을 방해하는 왜소증 장애인에 대한 격리지역의 운영이다. 북한이탈주민 상당수는 왜소증 장애인을 격리하는 지역이 존재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김형직군(구 후창군) 연하리이다. 2019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왜소증 장애인들이 후창에 보내질 때 친척이 시당책임비서였던 한 장애인은 거기서는 제외되었지만 변두리에 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림 II-7〉 목발로 이동하는 북한 장애인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일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따라서 왜소증 장애인을 목격하였다는 사례도 수집되고 있다. 함경북도 나선시에 거주했던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 나선 시내에서 왜소증 장애인과 척추장

애인을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일부 왜소증 장애인 격리촌이 운영되지만 모든 왜소증 장애인을 격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속적인 증언을 통해 왜소증 장애인 격리에 대한 보다 분명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애인의 거주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다른 사례는 장애인에 대한 거주지역 제한이다.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특수지역인 평양과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남포, 개성, 청진 등에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재고

북한도 장애자보호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북한 당국은 장애자보호법(2013) 제49조에 따라 2011년부터 6월 18일을 ‘장애자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⁴²⁾ 그리고 북한은 2010년부터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12월 3일 평양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를 기념하는 ‘장애자 연환모임(Joint Celebrations on the Occasions of the International Da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⁴³⁾ 북한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의 조직(2012년 11월) 등을 통해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참가하는 탁구경기가 정례화되고 있으며 참가인원 수도 늘어나고 있다.⁴⁴⁾

최근에 장애인이나 영예 군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다

42) 『조선신보』, 2014.6.24.

43) 이규창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증진 방안 연구』, p. 72; 『조선신보』, 2013.12.7.

44) 이규창, 위의 책, p. 72.

는 증언도 있었다. 북한은 장애인권리협약 최초보고서에서 공공시설 등에 대한 북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어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선진기술 도입 및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⁴⁵⁾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9년에 건설법규로 ‘무장애건축설계기준’을 채택하였다.⁴⁶⁾ 이는 북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북한 당국이 대중 매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 변화를 꾀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2016년경 장애인에 대한 당국의 배려를 TV에서 선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다. 또 다른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도 2017년 말부터 TV에서 장애인 공연단, 장애인 학교 등 장애인에 대한 소식이 많아졌다고 증언하였다. 2019년에는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 해 동안 북한 당국이 장애인 인권 증진을 취해 실시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⁴⁷⁾

실제로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평양시민 중에 장애인이 출생했다고 해서 지방으로 보내지는 않는다고 증언했다. 2018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최근 장애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손재간이 있어서 사는 형편이 괜찮고 영예 군인과 결혼하는 것도 좋아한다고 증언하였다. 장애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불쌍하게 생각한 적 없고 오히려 잘 살아서 시기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장애인들은 직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자기 돈벌이만 하기 때문에 더 잘 살아서 시집 장가를 잘 간다는 증언이 있었다.

이는 장애인 복지를 통해 당국의 치적을 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기피되었던 과거와 비교할 때 긍정적 변화로 볼 수도 있다.

45) UN Doc. CRPD/C/PRK/1 (2018), para. 76.

46) 『조선중앙통신』, 2019.12.18.

47) 위의 글.

III

코로나19가 취약계층 인권에 미친 영향



III. 코로나19가 취약계층 인권에 미친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 여성의 인권은 여전히 취약하다. 그러나 북한에서 시장화의 진전과 함께 여성의 위상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높아졌다. 바꿔 말하면, 북한 시장화는 비공식부문에서의 성장과 더불어 향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때 여성의 역할은 중요했다. 아래 <그림 III-1>은 시기별 장마당의 외형적 변화 과정이다. 즉, 2000년대 초기만 해도 시설과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재래시장 형태였다. 그러나 2003년 종합시장 정책에 힘입어 2005년에는 장마당이 현대화된 설비에 기반한 건물 형태로 공설시장화되면서 진화·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이는 여성이 역할이 컸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현대화된 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대부분이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III-1>

북한 장마당의 외형적 변화와 공설시장화 과정: 평양 동대원 구역 새살림 시장



출처: 구글 어스와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을 기반으로 저자 작성

그러나 이는 역으로 비공식부문에서의 경제가 위축되면 여성의 인권 신장에도 제약이 가해질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북한 또한 “코로나19가 진정한 제재”라고 말할 정도로 경제에 미친 영향은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민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장마당에서의 수입 물자 가격 폭등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실제 조사에서도 주민 삶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콩기름, 설탕, 밀가루 가격이 최대 5배 이상 폭등했으며, 이동의 통제로 인해 지역 간 격차도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바꿔 말하면, 코로나19는 비공식 경제 부문에서 대량의 실업자를 발생시켰으며, 이는 곧 여성의 경제활동 위축을 의미한다. 그간 8.3입금을⁴⁸⁾ 통해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대신 그 시간에 비공식부문에서 경제활동을 했던 남성들조차도 직장에 나가야 한다. 이는 다시 쌀 1kg도 되지 않는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결국 여성들의 가계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는 강화된 방역으로 인해 이동에 제약을 가한다. 이는 지역 간 이동을 통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였던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다가와 삶과 정신 건강을 해치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위축은 곧 아동의 인권 하락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가계 수입 감소와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생계의 부담과 여성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양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이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불평등한 상황이라면, 코로나19라는 경제적, 보건 위기는 여성의 인권

48) 북한에서 8.3의 어원은 ‘8.3 인민소비품 운동’으로 거슬러 갈 수 있다. 이는 1984년 8월 3일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시 경공업 제품 전시장을 시찰하면서 폐자재 및 부산물을 이용한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을 전 군중적으로 확대, 실시하라는 지시를 통해 시작된 운동이다. 따라서 국가 계획상에는 없는 제품이지만,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와 가내작업반, 부업반 등에서 유헴자재와 폐기물, 폐설물, 부산물을 이용하여 만든 생활소비품인 만큼 자재가 충분하지 못해 제품의 질이 좋지 못하였다. 따라서 8.3의 의미는 진품이 아닌 가짜, 유사제품의 의미와 가깝게 쓰였다. 여기서 쓰인 8.3 임금 또한 이와 유사하다. 즉, 공식적인 직장에 나가지 않는 대신 일정 정도 돈을 내고, 그 남은 시간에 비공식적인 부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과 더불어 아동의 권리에 더욱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동안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에서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률은 호전되어 왔다고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의 일방적인 국경봉쇄로 인해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의약품조차 북한으로 반입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해 왔다.

식량 또한 최악의 상태는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당수 북한 아동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조치 및 국제사회의 수원 거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불안정성을 초래하여 식량 수급에 차질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국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여성, 아동, 장애인 등 북한 취약계층에 더욱 충격을 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코로나19가 미친 격차의 확대 문제는 비단 북한만의 상황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취약한 정치·경제구조에서는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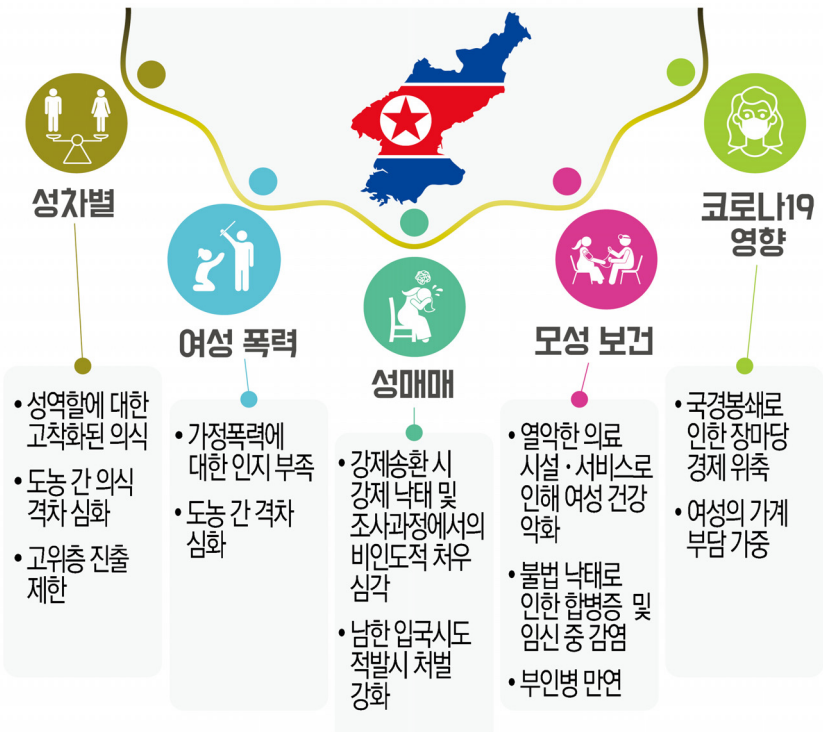
결론



IV. 결론

본 보고서는 여성, 아동 및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어서 김정은 시대 북한 인권 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림 IV-1〉 북한의 여성권 실태



조사 결과, 김정은 시대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은 여전히 취약했다. 여성의 경우, 사회적으로 차별의식이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가정 폭력 또한 여전히 심각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였다. 특히 군

대 내 혹은 군 주둔지역에서의 성폭력이 빈번하였으며, 숙박업소에서의 성매매가 증가하였다. 문제는 북한 사회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제도적 보호나 처벌 장치가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성에 대한 교육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도농 간에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었다. 또한 열악한 의료시설은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남성의 피임에 대한 의식이 매우 부족하였다. 이는 결국 여성들에게 피임을 강요하고 건강을 해치는 악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 또한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사회적 통념이 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가로막고 있었다. 한편, 탈북 이후 북한으로 다시 강제송환 당할 경우, 강제 낙태 등 조사과정에서의 비인도적 처우가 만연하였다.

물론 김정은 시대 들어 일부 여성권과 관련하여 개선된 측면들도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한 상황이 북한 여성을 생계에 뛰어들게 하였으며 남성을 대신하여 가계를 책임지게 하였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증대시켰으며 이로 인해 가정 내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으로도 여성의 위상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 여성이 비공식 영역에서만 아니라 공식 및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일정 정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을 차별하는 고정된 사회적 인식이 뿌리 박혀 있다.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여성 지위 변화는 주로 중·하위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최고위층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중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도 보였다. 바꿔 말하면, 김정은 시대 들어 여성의 권리 신장을 위한 법·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동의 인권 측면에서 김정은 시대 법·제도를 통해 교육제 개편

및 현대화된 학교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개선된 측면도 있었다. 특히 애육원 등의 신설을 통해 고아 등 취약 아동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을 건설하는 과정을 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제 동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시설들이 도시의 중심지와 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고아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전히 아동들은 정치적 행사 등에 동원이 되고 있어 학습권에 대해 침해를 받고 있었다. 농촌지원 등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는가 하면 파철, 파지, 토끼가죽 등 각종 과제의 제출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다. 또한 농촌이나 중소도시의 아동들의 경우, 생계를 위해 학교에 나가지 않는 등 교육권을 박탈당하고 있었다.

장애인 또한 북한 당국의 처우 및 인식이 김정은 시대 들어 상대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취약하였다.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해 차별의식이 뿌리 깊어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다.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장애인 인권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운 이유이다. 또한 일부 북한이탈주민은 장애인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한다.

이러한 구조적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취약계층의 인권 향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공식 영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가계를 책임지는 여성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고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며 활동의 제약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가중될 것이다. 이는 결국 아동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의 원천 감소는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